



제 1186호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11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조례 제11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	5
○ 조례 제11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중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
○ 조례 제11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	16
○ 조례 제11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조례 제11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1
○ 조례 제11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조례 제11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1
○ 조례 제119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42
○ 조례 제11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조례 제11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조례 제11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 조례 제11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62

공 고

○ 공고 제2014- 1302호	2014년 7월 수시분 및5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64
○ 공고 제2014- 1306호	공인 신조 공고	72
○ 공고 제2014- 131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만부경로당)사업 공사완료 공고	78

회 람								
----------------	--	--	--	--	--	--	--	--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관리책임부서인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남동문화예술회관’의 현 명칭이 타 예술회관과 유사하여 관람객이 장소를 혼동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타 기관과 명확히 구분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새 명칭으로의 변경 필요성 대두
- 주민공모와 심사를 통해 새로운 명칭을 선정하였기에 명칭변경을 위한 기구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회관에 대한 인지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1의2] 사업소의 명칭
 - (기존) 남동문화예술회관 ➡ (변경) 남동소래아트홀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8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에서”를 “중에서 지역·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을 “위원”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다만”을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직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지역·성별·연령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위원”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직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임기 중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하며, 위원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임기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주민참여예산 각 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행 이후 최장 가능 기간 4년 만료 시기 도래 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을 교체해야함에 따라 안정적·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위원 임기를 개정하고 지역회의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는 연임 가능,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4항)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위원 임기는 연임 가능, 위원장·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개정(안 제20조제4항)
- 지역회의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토록 함(안 제20조제7항)
-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구성 시 지역·성별·연령 등 고려토록 명시(안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부칙 신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남동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남동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등,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및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남동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남동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

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경우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

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남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 ②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가 확대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누락된 사항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구청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던 것을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규칙에 관련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일부 삭제(안 제8조)
- 기존 조례에 누락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제한 규정 확대(안 제16조)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시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6조제4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시행(2009.11.1)으로 같은 항 [별표 2]의 소매인 지정기준(담배 자동판매기 포함)이 삭제되어 조례의 준치근거가 없어지고,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2009.11.1. 신설) 및 「남동구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보다 제한 범위가 넓어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이류(폐지, 종이팩 구분)

제6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폐건전지

9. 폐형광등

제4장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의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유해성 폐기물인 폐건전지, 폐형광등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을 중점 수거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 기준 대상에서 ‘숙박업’이 삭제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완화로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나 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점수거 품목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추가지정(안 제6조)
-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4장, 제5장제24조~제25조)
-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숙박업소’ 삭제
- [별표1]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 나. 민·관·군·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5.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3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
 - 가.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나.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 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 라. 항방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산의료장바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 마. 예비군 사기양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교육장
3. 남동경찰서장
4.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장
5.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남동구담당관
6. 육군 제7302부대 남동구담당관
7. 남동소방서장
8. 남동구 재향군인회장
9.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담당과장
3. 작전(예비군)담당간사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 작전장교, 동원장교
4.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남동구담당관, 남동경찰서 경비 과장, 제17보병사단 507여단 47관리대대 보안담당관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협의회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 ①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각 지원반은 해당 분야의 담당팀장 1명과 팀원으로 구성하고 총괄, 인력·재정, 건설·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통신·전산, 보급·급식, 홍보 분야 등 7개 반으로 구성하며, 각 반별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 지원반(장)

- 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주관

2. 인력·재정 지원반(장)

-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계획의 수립·시행
-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 다.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재정동원 집행의 준비 및 지원
-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바. 주민통제업무를 관장
- 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결산

3. 건설·수송·장비 동원 지원반(장)

- 가.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 확보 등
-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 다.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 라. 국가 동원계획의 건설·수송 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시행
- 마.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 피해복구 업무관장
- 바. 차량 통제

4. 의료·구호 지원반(장)

-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영,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라. 국가동원계획에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5. 통신·전산 지원반(장)

- 가.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라. 관·군·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 마.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 바. 국가동원 계획에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

6. 보급·급식 지원반(장)

- 가. 보급 및 급식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업무 관장
- 나. 보급 및 급식장비 지원
- 다.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7. 홍보 지원반(장)

- 가. 홍보 및 계몽활동의 수립·시행
- 나. 홍보 매개체를 조정·통제하고 홍보(계몽)반 편성 운영
- 다.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시행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동 지원본부) 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3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동 지원 본부의 본부장은 7급 이상 선임이 되고 상황실장은 7급 이상 차선임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⑤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을 구 여건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심의사항의 세부적 명시, 실무위원회 구성 대상의 명확화, 비상대비 시 통합방위상황실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기존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협의회 심의사항을 세분화하여 명시(안 제2조)
 -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인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세부사항 명시
-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 협의회 운영 중 간사 변경(안 제4조)
 - 총무, 민방위, 작전, 정보담당 간사를 우리구 여건에 맞게 조정
-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 등 규정 명확화(안 제5조)
 - 구성인원 : 10명 이내
 - 위촉대상 : 의장은 협의회 회장,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를 위촉대상 범위 규정
- 지원본부 및 동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6조 및 제7조)
 - 비상대비 통합방위 상황실 및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주요 임무를 세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 도모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개폐하는”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거하여”를 “따라”로 하고, 중반부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 같은 항 제2호 및 제3항제1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6호 내지”를 “제6호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통장에 대하여”를 “통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촉된 자에 대하여”를 “위촉된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제5호”를 “제7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제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약간 명”을 “몇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보건복지부 동(洞)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2013.11) 및 남동구 동(洞)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계획에 의거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통장 복지도우미 임무 신설(안 제7조제5호)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의 지정과 그 금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 및 운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약정 기간) 금고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기준) ① 제6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3항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12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금고약정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그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소계	33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6점) - 국내 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소계	18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소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	

[별표 2]**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1. 일반원칙**

-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 라.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점)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4)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가능

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민 이용의 편의성 (18점)

1) 관내 지점의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5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9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2014. 3. 7)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금고지정 관련 용어의 정의 및 금고약정 기간 등(안 제2조~제5조)
-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안 제6조 및 제7조)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제10조)
- 금고지정 절차(안 제11조)
- 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및 해지(안 제12조 및 제13조)
- 금고운영 보고 및 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안 제14조~제16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가·무인민원발급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행 또는 발급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 납부 및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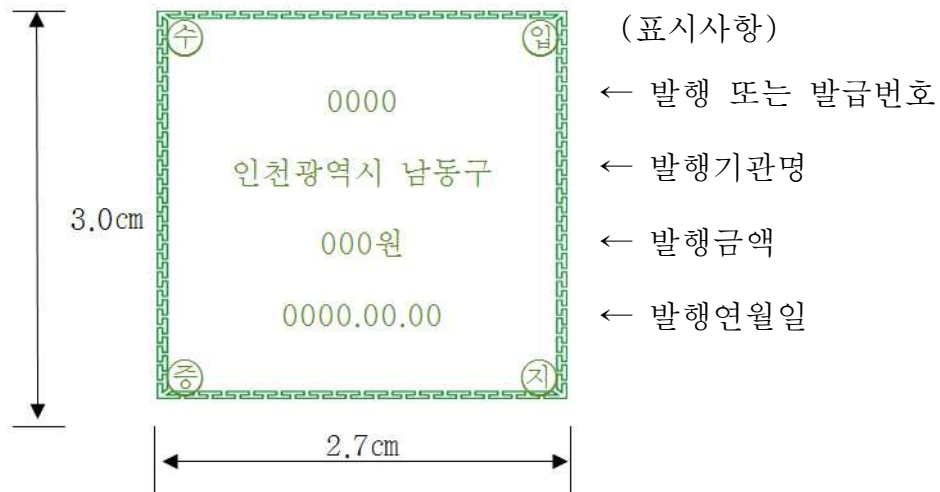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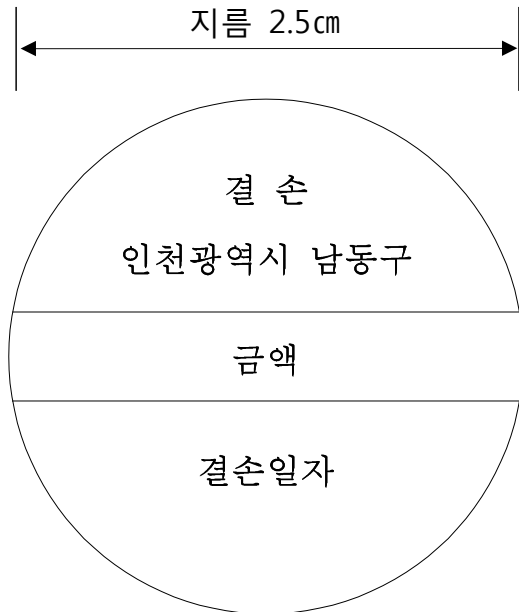
제3조(종이 수입증지의 환불)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이 수입증지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 수입증지의 처리는 이 조례 제6조의 절차에 따른다.

[별표1]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제4조 관련)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표2] 결손인 규격 및 표시(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수입증지요금계기용)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단위 : 원)

일자	구분		금액별 발행 내역												결손 (B)	실 발행 (A-B)
			계 (A)	100												
/	일계	건수														
		금액														
	누계	건수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통합민원발급기용)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 :

답 당 자 :

기기번호 :

정산일자 :

(단위 : 원)

[illegible]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무인민원발급기용)

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조회기간 :

정산일자 :

(단위 : 원)

순번	발급기명	발급기IP	건수합계	증명서 종류														
			수수료합계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2011.8.22., 의안번호 제2011-97호)』 및 『안전행정부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2011.7)』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까지 보관해 오던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는 한편,
-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납부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항변경 : 개정 전 26개조
 ⇒ 개정 후 8개조
 (존치 2개조, 수정 4개조, 폐지 20개조, 신설 2개조)
-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전자적 납부 도입 근거 신설 (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부칙 제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관람제한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여 장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관람제한 중 정신이상자 삭제(안 제16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조항 중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지식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항 제3호, 제12조, 제1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2항, 제4항 중 “관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정신이상자 및”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 본문 중 “구청장은”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 및 관장으로”을 “도서관 지도감독부서의 장 및 센터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 별표 1 및 제10조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도서관 명칭	위 치	비 고
소래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서창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서창근린공원 내)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3층)	간석3동 주민센터 내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2층)	만수2동 주민센터 내

[별표 2]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 (제10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구 분	시 간		
세미나실 (문화교실)	주 간	4	20,000원	09:00 ~ 18:00
	야 간	4	30,000원	18:00 ~ 22:00
다목적실 (소극장)	주 간	4	30,000원	09:00 ~ 18:00
	야 간	4	50,000원	18:00 ~ 22:00

※ 1회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초과 시 시간당(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2. 자료복사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흑백	칼라	
복 사 기	A4	40	70	1면당
	B4	50	80	
	A3	60	90	
프 린 터	A4	50	80	
	B4	60	90	
	A3	70	100	

3. 사물함 사용료

1일 사용료	1개월 사용료	비 고
500원	9,000원	각각의 해당 월을 1개월로 함.

※ 주. 환불금액은 사용신청 잔여일수 1일당 300원씩 일할로 계산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2013.2.28 지식정보센터 신설, 통합도서관 서비스 및 새주소 시행 등 일련의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함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및 남동구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안 제6조~9조, 제12조, 제17조, 제32조, 제35조)
- 정신장애인 출입 및 이용제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
-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불반환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신설조직에 맞게 변경 (안 제14조제4항)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 개정
(안 제31조제1항,2항)
- 도서관 위치 주소를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경(안 제4조 별표 1)
-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조항 삭제(안 제10조 별표2의 3)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31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설 및 인력기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해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위탁선정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위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4조제2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6조제5호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복지법 제43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를 “소관업무,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위탁사업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보험가입)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의해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노인복지법의 개정(2013.12.5시행)으로 남동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신설(2013.12.5시행)내용 반영
- 위탁운영시 절차 및 방법, 위탁취소 요건 개정(안 제4조~제7조)
 -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내용 반영
- 업무 처리과정(신청→등록→자격조회→선발)에 관한 참여자 등록 및 등록취소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및 제11조)
- 시설의 화재·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내용 개정(안 제13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4년 8월 5일

남동구 조례 제119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요일제(5부제) 참여 차량 : 30퍼센트 감면, 흠뻑제(격일제) 참여 차량 : 50퍼센트 감면”을 “요일제 참여 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요일제·홀짝제로 나누어 운영하던 승용차부제 방식을 “승용차 요일제”로 단일화함에 따라 각 부제별로 차등 적용하던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단일화하고, 시 조례에 맞춰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요일제 참여 차량 : 50퍼센트 감면(안 제5조제3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1302호

공 시 송 달

성 명 이**규외 96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4년 7월 수시분 및 5월 독촉분 지방소득세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 하였으나, “주소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반송함 장기방치”, “국외이주”, “직권말소” 및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 불능인 바, 당초 납기 2014.07.31일을 2014.08.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오니 기한내 금융기관 및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연번	납세번호	발송지	납세자번호	개인(법인) 명	과세물건	세액합계	공고사유
1	135001 2014 07 2 660 0002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2 (도림동)	361108-*****	이**규	기타용수	29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	140002 2014 07 2 510 000470	울산광역시 북구 천국길 165, 102동 809호 (천국동,대동아파트)	750513-*****	유**석	2014.02)-예정신고분	5314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3	140002 2014 07 2 520 000497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34-10, B04호 (구월동)	571120-*****	이**순	2003.02)-확정결정분	13151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4	140002 2014 07 2 551 0004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61번길 42, 113동 504호 (간석동,범양아파트)	750801-*****	홍**원	2014.02)-예정신고분	10318780	기타 고지서 미송달
5	140002 2014 07 2 551 0004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38, 301호 (간석동,이수타운)	550829-*****	김**배	2006.03)-확정결정분	84669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6	140002 2014 07 2 560 0004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38번길 44, 1동 203호 (만수동,삼화다세대주택)	620820-*****	이**자	2003.12)-경정결정분	48434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7	140002 2014 07 2 583 00048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40 (만수동)	730407-*****	차**호		72548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8	140002 2014 07 2 700 0004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75번길 6-6, 402호 (논현동)	680726-*****	이**하	2014.02)-예정신고분	900720	기타 고지서 미송달
9	140002 2014 07 2 710 000498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96, 904 동 2002호 (논현동,에코메트로한화꿈에 그린아파트)	620217-*****	박**숙	2006.12)-확정결정분	3874211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10	140003 2014 07 2 510 0020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 플러스 1103호 (구월동)	120111-*****	(주)한**지 **	2012년 귀속 법인세	40108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1	140003 2014 07 2 560 0020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37 (만수 동,3층)	120111-*****	세**알** 디(주)	2012년 귀속 법인세	312702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2	140003 2014 07 2 710 00202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202-2호 (논현동, 씨티짱)	120111-*****	(주)두**중 **건**	2012년 귀속 법인세	63958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13	140004 2014 07 2 510 0058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277번길 24 (논현동)	110111-*****	이**디** 퍼**(주)	2014년03월귀속분	27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14	140004 2014 07 2 510 0058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277번길 24 (논현동)	110111-*****	이**디** 퍼**(주)	2014년03월귀속분	2521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15	140004 2014 07 2 510 00584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7, 701 호 가주프라자 (구월동)	120111-*****	모**일** 키	2014년02월귀속분	64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16	140004 2014 07 2 510 00585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6 (구월 동,구월파티마오피스텔 1401호-5호)	121111-*****	에**앤** 대**중**	2014년03월귀속분	58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17	140004 2014 07 2 510 0059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11 (구월동,에스파스401-2호)	801222-*****	고**목	2014년03월귀속분	1347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18	140004 2014 07 2 510 0059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61 (구월동,2층)	124611-*****	(주)대**티 **씨	2014년02월귀속분	81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19	140004 2014 07 2 510 0059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61 (구월동,2층)	124611-*****	(주)대**티 **씨	2014년02월귀속분	117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0	140004 2014 07 2 510 0060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22 (구월 동,태웅빌딩5층)	120111-*****	국 ** 지 ** 측 ** 기 ** 단(주)	2014년03월귀속분	58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1	140004 2014 07 2 510 0060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5, 602호 벤처빌딩 (구월동)	120111-*****	에 ** 케 ** 비 ** 트 ** 스(주)	2014년03월귀속분	166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2	140004 2014 07 2 510 006075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1 (구월동, 씨티프라자601호)	120111-*****	다 ** 에 ** 엔 ** 식 ** 사	2014년03월귀속분	129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3	140004 2014 07 2 510 006077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1 (구월동, 씨티프라자601호)	120111-*****	주 ** 회 ** ** 울 ** 러 **	2014년02월귀속분	251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4	140004 2014 07 2 510 0060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63 (구월동,3층)	120111-*****	국 ** 전 ** 복 ** 사 ** 단*주**회 **	2014년03월귀속분	16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5	140004 2014 07 2 510 0062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26 (구월동) 굿모닝오피스텔 2층	110111-*****	주 ** 회 ** **크**	2014년03월귀속분	32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6	140004 2014 07 2 510 0062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23번길 26 (구월동) 굿모닝오피스텔 2층	110111-*****	주 ** 회 ** **크**	2014년03월귀속분	12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7	140004 2014 07 2 520 006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12, 4층전 체 (구월동)	120111-*****	주 ** 회 ** 에 ** 앤 ** 프	2014년02월귀속분	1202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8	140004 2014 07 2 520 0060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12, 4층전 체 (구월동)	120111-*****	주 ** 회 ** 에 ** 앤 ** 프	2014년02월귀속분	82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29	140004 2014 07 2 521 006007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8-3 (구월동)	124871-*****	노 ** 법 ** ** 원 ** 분 **무**)	2014년02월귀속분	756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0	140004 2014 07 2 521 00600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8-3 (구월동)	124871-*****	노**법** **원**분 **무**)	2014년03월귀속분	180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1	140004 2014 07 2 530 00582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6, 영 승빌딩 5층 501호 (간석동)	801013-*****	주**진	2014년03월귀속분	14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2	140004 2014 07 2 530 006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08, 2층 (간석동,KT인천지사)	120111-*****	주**회** **진	2014년02월귀속분	70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3	140004 2014 07 2 551 0060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99, 1205호 (간석동,아트폴리스)	124771-*****	재**영** 조**법**	2014년03월귀속분	27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4	140004 2014 07 2 551 0060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7 (간석동,3층)	120111-*****	(주)에**에 **치**링**	2014년02월귀속분	166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5	140004 2014 07 2 551 0060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26번길 39, 82호 (간석동,청실프라자 지층)	120111-*****	비**엠** 리**(주)	2014년03월귀속분	345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6	140004 2014 07 2 551 00618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99, 1동 1407호 (간석동, 아트폴리스)	110111-*****	와**제** 드**투**	2014년03월귀속분	273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7	140004 2014 07 2 560 00625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7, 효산빌딩 3층 (만수동)	120111-*****	(주)선**이 **씨	2014년03월귀속분	2452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38	140004 2014 07 2 700 0058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22 (논현동)	121111-*****	주**회** 기**	2014년02월귀속분	50514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39	140004 2014 07 2 700 0061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75번길 41, 남동공단19블록10로트 (논현동)	110111-*****	제**에** 비**로** 텍(주)	2014년03월귀속분	76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0	140004 2014 07 2 710 0058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52 (고잔동)	120111-*****	한**화** (주)	2014년03월귀속분	1095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1	140004 2014 07 2 710 0059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54번길 53 (고잔동,96블록 10로트)	781215-*****	박**혜	2014년03월귀속분	38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2	140004 2014 07 2 710 0060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340번길 7, 남동공단91블록16로트 (고잔동)	120111-*****	폐**물** 동**거** 영**구(주)	2014년03월귀속분	48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3	140004 2014 07 2 710 0061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25-16, 1층 (고잔동)	731220-*****	윤**운	2014년02월귀속분	14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4	140004 2014 07 2 710 0061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48번길 55, 남동공단 104블록 12로트 (고잔동)	124611-*****	에**오** (주)	2014년03월귀속분	251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5	140004 2014 07 2 710 0061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387, 남동 공단76B11L (고잔동)	110111-*****	(주)삼**수 **	2014년02월귀속분	747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6	140004 2014 07 2 800 0058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51, 24B-13L(1층,2층) (논현동)	530712-*****	이**동	2014년03월귀속분	50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7	140004 2014 07 2 800 0058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51, 24B-13L(1층,2층) (논현동)	530712-*****	이**동	2014년03월귀속분	415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8	140004 2014 07 2 800 00586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54번길 53, 남동공단96블럭10로트 (고잔동)	640213-*****	한**열	2014년03월귀속분	164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49	140004 2014 07 2 800 0058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595번길 15 (고잔동,134블럭4롯데)	760610-*****	최**식	2014년03월귀속분	11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50	140004 2014 07 2 800 0062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396, 505 호 남동시범공단 (논현동)	670227-*****	조**희	2014년03월귀속분	105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51	140004 2014 07 2 800 0062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69, 4블 럭3롯데 (남촌동)	681001-*****	채**용	2014년03월귀속분	32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52	135001 2014 05 2 660 0001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2 (도림동)	361108-*****	이**규	기타용수	142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53	140001 2014 05 2 510 00138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25, 202호 (구월동)	630628-*****	서**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00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54	140001 2014 05 2 510 00139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30, 523호 (구월동,청진네오스빌)	660720-*****	변**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0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55	140001 2014 05 2 510 0014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62번길 32, 4동 901호 (구월동,팬더아파트)	540810-*****	최**식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50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56	140001 2014 05 2 520 001399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58, 3동 601호 (구월동,신세계아파트)	870819-*****	이**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720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57	140001 2014 05 2 522 0014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9번길 16-8, 501호 (구월동,창광에센빌)	641215-*****	김**인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7027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58	140001 2014 05 2 522 00144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39번길 42-7, 101호 (구월동,청룡주택)	710320-*****	박**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3050	기타 고지서 미송달
59	140001 2014 05 2 530 00128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25번길 68, 403호 (간석동,대성파크빌)	711006-*****	양**식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5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60	140001 2014 05 2 530 00130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95번길 44, 2동 309호 (박촌동,아주아파트)	730921-*****	김**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61	140001 2014 05 2 560 0012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21 아주 아파트 나-301	660204-*****	X*H*N*G*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74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62	140001 2014 05 2 650 0011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205번길 22, 102동 401호 (서창동,동보아트빌)	720102-*****	원**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24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63	140001 2014 05 2 660 001209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69번길 13, 가동 102호 (남촌동,광우빌라)	611110-*****	양**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723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64	140001 2014 05 2 660 0013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535번길 27, B동 101호 (남촌동,성보빌라)	650803-*****	추**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25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65	140001 2014 05 2 660 0013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69번길 6-10, 제비동 101호 (남촌동,건영빌라)	641210-*****	주**성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32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66	140001 2014 05 2 660 0013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118, 101호 (남촌동)	670110-*****	조**정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971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67	140001 2014 05 2 660 0013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25번길 35, 7동 201호 (남촌동,장미주택)	570718-*****	차**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68	140001 2014 05 2 660 0013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52-1, 202호 2층 (남촌동)	770107-*****	서**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107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69	140001 2014 05 2 690 00121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10번길 7, B 동 101호 (논현동,대양빌라)	620217-*****	궁**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0540	기타 고지서 미송달
70	140001 2014 05 2 700 0011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곡로77번길 2, 201호 (논현동)	510128-*****	이**용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52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71	140001 2014 05 2 700 00130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6, 612동 2802호 (논현동,어진마을한화꿈에그린 아파트)	730519-*****	강**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72	140001 2014 05 2 700 001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513동 607호 (논현동,논현휴먼시아)	580622-*****	최**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927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73	140001 2014 05 2 700 001414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외로 439, 212 동 1003호 (논현동,논현주공아파트)	751014-*****	배**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841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74	140001 2014 05 2 700 001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70번길 122, 103동 603호 (논현동,동보아파트)	651018-*****	방**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744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75	140001 2014 05 2 710 00128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21, 1002동 1301호 (논현동,에코메트 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570224-*****	권**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8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76	140002 2014 05 2 700 0003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203 동 709호 (논현동,논현휴먼시아 범마을)	430512-*****	박**원	2009.07)-확정신고분	1024876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77	140003 2014 05 2 800 0002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410번길 7, 3층 남동공단 32블럭 11롯데 (남촌동)	120111-*****	화**커** 터(주)	2012년 귀속 법인세	1227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78	140004 2014 05 2 510 004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75, 401 호 심복빌딩 4층 (구월동)	120111-*****	(주)샤**디 **플**이	2014년01월귀속분	83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79	140004 2014 05 2 510 0042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3, 202호 뉴 인천빌딩 (구월동)	681030-*****	김**인	2013년12월귀속분	42857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80	140004 2014 05 2 510 00442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 플러스 901호 (구월동)	134211-*****	유**아** 정**통** (주)	2013년12월귀속분	1184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1	140004 2014 05 2 510 0044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8, 타워 플러스 901호 (구월동)	134211-*****	유**아** 정**통** (주)	2013년12월귀속분	5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2	140004 2014 05 2 510 004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7, 701 호 가주프라자 (구월동)	120111-*****	모**일** 키	2013년12월귀속분	14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3	140004 2014 05 2 510 0047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1, 704호 한빛빌딩 (구월동)	120111-*****	주**회** **온**이 **디	2014년01월귀속분	9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4	140004 2014 05 2 510 0049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242 (논현 동,남동공단23블럭9로트)	730915-*****	이**기	2014년01월귀속분	6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5	140004 2014 05 2 550 0041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8 (간석동)	711023-*****	이**진	2014년01월귀속분	12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6	140004 2014 05 2 550 004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99, 1층 (간석동)	121111-*****	다**정**	2013년12월귀속분	60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7	140004 2014 05 2 550 0046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42, 만민빌 딩2층 (간석동)	750130-*****	김**범	2014년01월귀속분	2157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8	140004 2014 05 2 551 00447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 A동 1101호 (간석동,간석오피앙오피스텔)	120111-*****	주**회** 에**엠** 이**씨	2014년01월귀속분	849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89	140004 2014 05 2 551 00447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11, A동 1101호 (간석동,간석오피앙오피스텔)	120111-*****	주**회** 에**엠** 이**씨	2014년01월귀속분	3885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90	140004 2014 05 2 700 0043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62번길 30-18, 에이동(53B-7L) (논현동)	110111-*****	태**개** 주**회**	2013년12월귀속분	384070	이사감 고지서 미송달
91	140004 2014 05 2 700 0044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씨티짱빌딩4층407호 (논현동)	120111-*****	(주)에**제 **앤**이 **로**	2013년02월귀속분	1620150	수령인없음 고지서 미송달
92	140004 2014 05 2 710 0043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15-15 (고잔동)	120111-*****	(주)오**엠 **피	2013년09월귀속분	388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93	140004 2014 05 2 710 00437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15-15 (고잔동)	120111-*****	(주)오**엠 **피	2013년10월귀속분	3883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제1186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4. 8. 5. 화요일

94	140004 2014 05 2 710 0043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15-15 (고잔동)	120111-*****	(주)오**엠 **피	2013년12월귀속분	855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95	140004 2014 05 2 710 004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199번길 96, 3층 (고잔동)	120111-*****	(주)이**라 **팅	2014년01월귀속분	601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96	140004 2014 05 2 710 0044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75, 남동 공단 118블럭 16롯데 (고잔동)	120111-*****	서**테** (주)	2014년01월귀속분	2046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97	140004 2014 05 2 710 004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340번길 7, 남동공단91블록16로트 (고잔동)	120111-*****	페**물** 동**거** 영**구(주)	2014년01월귀속분	4980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 명 고지서 미송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306호

공인 신조 ·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신조 사유

: 제156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획예산실)에 따른 회관 명칭 변경

○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4. 8. 5

○ 신조 · 폐기 공인명 : 신조(12개), 폐기(1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인		한글전서체 2.1cm × 2.1cm	
신 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 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남동소래아트홀 채권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조 공인	남동소래아트홀 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조 공인	남동소래아트홀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조 공인	남동소래아트홀 지출원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조 공인	남동소래아트홀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신조 공인	남동소래아트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인		한글전서체 2.1cm × 2.1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2.0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채권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2.0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2.0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분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2.0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지출원인		한글전서체 2.0cm×2.0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폐기 공인	남동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 1.8cm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311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만부경로당)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3-112호(2013.11.8.)호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사회복지시설 : 만부경로당】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11-21(논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명 칭 : 만부경로당
3. 사업의 규모 : 지상2층 / A=991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
 - 주 소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기간 : 2013. 11. 8. ~ 2014. 5. 15.